

『2024년 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년 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6일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I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지원 및 정체성 강화
- 분야별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운영 애로사항 해소 및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남에 위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 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협동조합
- ②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규모

- (선 신청순) 7개소 선정 (개소당 컨설팅 2회 제공)

□ 지원 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4. 9. 30.(월) 까지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4. 8. 16.(금) 까지

(※선 신청순 마감예정)으로 희망하시는 협동조합은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주관**

- 주 최 : 경상남도
- 주 관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II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협동조합 운영 관련 3개 분야 중 택1 (*아래 지원내용 참조)
 - (경영·행정지원) 운영에 필요한 경영 분야 컨설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 (성장지원) 업종별 및 사업화 분야 컨설팅 (마케팅, 브랜딩, 시제품 개발 등)
 - (운영지원) 조직 내 갈등관리, 조합 해산 프로세스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컨설팅 주제 예시
경영·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 인사노무 / 법무특허 - 조직변경 / 정관변경 / 변경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매뉴얼 제작, 역량강화 지원 - 노동법 및 노무 이슈 (취업규칙 등) 관리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개발 / 홍보·마케팅 / 브랜딩 -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분석, 아이템 발굴, 신규 서비스상품 기획 - 브랜드 스토리·슬로건 기획, 제품포장 디자인 - 중앙·지자체 등 정책자금 사업제안서 작성 검토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갈등관리 - 협동조합 해산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해산·청산 절차 안내 및 진행 가이드

(※ 컨설팅 세부 내용은 1차 진단 등을 통해 조정·확정 예정)

□ **지원내용**

- 전문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
- 기업별 컨설팅 2회 진행 (7개소)
 - (1회차) 현황 및 문제 진단 인터뷰
 - (2회차)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지원절차**



III

신청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 8. 16.(금) 까지

(※예산 범위 내 선 신청순 마감예정으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이메일(moducoop@moducoop.com) 제출.

[오프라인 제출 없음 / 메일 주소 유의]

□ 제출서류

- 아래 표에 지정된 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전환 후 상기 이메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서식 1] 활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서식 1-붙임①] 활용
3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사본	
5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IV

문의처

주관기관	전담부서	사업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전략본부	선임연구원 김선정	055-266-7970	moducoop@moducoop.com
		(우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증축동 410호		

□ 유의사항

-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컨설턴트의 선정, 매칭 관련 사항은 모두의경제 고유 권한으로서, 관련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적격여부 및 컨설팅 일정 등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며, 미확인·연락두절·일정착오로 인한 불응 시 신청포기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의경제에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참여 및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수행점검을 위한 일정 보고 요청 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